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기업경제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11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고령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제6조제1항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의 내용 추가 신설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제3조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① 군수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기간
2. 의무 이행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<신 설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0px;">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약된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상품권의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</p> <p>① 군수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협약 기간 2. 의무 이행 사항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기업경제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563